

디지털도서관과 개정저작권법에 대한 연구

서울산업대학교 도서관
최 용 주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II-1. 디지털도서관의 개념과

저작권

II-2. 디지털도서관 운영과 전송권

II-3. 디지털도서관과 저작권 문제

II-4. 디지털도서관과 개정 저작권법

관련내용

1. 도서관과 저작권법

2. 개정 저작권법의 내용

III. 결 론

IV. 참고문헌

I. 서 론

최근 정보매체를 통한 지식의 공급은 지식의 발달과 전달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고 습득하는 양의 지식보다 습득하지 못하는 양의 지식이 훨씬 많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적 정보의 빈곤에 허덕이게 되었다. 따라서 다양한 정보량의 축적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정보처리 속도는 급속하게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원하는 정보의 검색, 이용 문제는 계속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우리 앞에 현실로 보여지고 있다.

우리는 현재 디지털혁명의 변혁기서 살고 있다. 디지털혁명의 기수가 되어온 인터넷 열풍은 남녀노소 학력, 연령에 관계없이 우리사회 깊이 퍼져있어 인터넷은 이제 모든 계층에서 사용되는 공용용어가 되었다. 현재 인터

넷 가입자수가 1천 9백만명을 뛰어 넘고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수가 400만 가구가 넘는다는 사실만 보아도 우리는 디지털 정보터미에 살고 있다는 것을 새삼 실감하게 된다. 또한 오늘날 우리 정보환경은 다양한 계층이 직접 사회에 참여하는 환경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고 모든 분야에서 정보의 상호의존 관계가 증가되고 있으며 어느 때보다도 정보의 원활한 유통이 중요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하여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수평적인 의사전달통로가 확대되고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는 지식활동시대,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가능케 하는 정보관리의 분산 시스템이 활발하게 운영되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식정보사회에서의 대학도서관 업무내용도 기존의 정보의 축적, 검색업무 외에 필요한 지식정보원의 개발 및 확보, 정보검색이론의 개발 및 평가, 모든 정보자료의 디지털화, 새로운

정보서비스 방법의 개발 등 새로운 효과적인 지식정보처리를 위한 정보관리 업무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있다.

현재 대부분의 대학도서관들이 웹을 이용한 정보서비스 강화, 공공도서관의 정보화사업 또는 전문연구소 및 특수도서관에서 원문정보제공의 필요성 증가 등으로 디지털도서관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높아져 가고 있으나 그런 제반사항에 대한 문제점도 발생되어 가고 있다.

새로운 정보기술을 필요로 하는 디지털 정보 환경은 도서관이라는 한정된 공간 이외에도 인트라넷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누구나 용이하게 원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효과적인 검색기술에 의해서 적합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이와같이 컴퓨터의 도움으로만 이용할 수 있는 전자적 기록매체에 의한 정보의 출현은 우리사회에 예상하지 못한 도움을 주고 있는 반면에 해결해야 하는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

정부는 이런 디지털 환경하에서 저작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저작권산권의 제한범위에 대해 그 내용을 부분적으로 개정 또는 신설하였다. 이 개정법령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00년 7월 27일에 관련 시행령이 공포 발효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저작권법의 내용에는 디지털 환경에서 전자도서관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용어의 정의 및 정보의 디지털화에 대한 조항도 신설하였다. 그러나, 사회적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개정된 법조항과 이후 공포한 관련 시행령의 내용이 현재의 우

리 여건에서 도서관 등이 자료의 디지털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도서관 등이 자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원문정보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향후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함에 있어서, 저작권법 및 시행령에 어떻게 대응하고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인지 또는 현실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항목별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II. 본 론

II-1. 디지털도서관의 개념과 저작권

디지털도서관은 한 마디로 말해서 전자화된 정보(본문, 이미지, 비디오 등을 디지털화한 정보)의 다양한 포맷을 포함하고, 시간과 공간의 제한없이 다양한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충족 시킬 수 있는 도서관으로 도서관간의 협력으로 자료의 공동활용이 가능한 도서관을 말하고 있다.

디지털도서관은 소장자료의 서지사항뿐만 아니라 본문 데이터를 모두 포함하는 디지털을 의미한다. 결국 디지털도서관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정보를 이용할 수 있으며 본문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디지털정보 관리시스템의 구축으로 정보의 신속, 정확한 활용이 가능해지며 상호협력 네트워크의 개발로 방대한 정보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도서관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각국

에서는 도서관자료를 대상으로 전자도서관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전자도서관을 구축하여 '99년부터 국립도서관을 비롯한 6개 기관이 공동으로 전자도서관 서비스를 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도서관 구축사업은 소장자료의 디지털화 및 디지털화된 자료의 전송 등에 있어 복잡한 저작권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전자도서관사업의 궁극적 목적이 도서관에 가지 않고도 안방에서 원하는 자료의 원문을 받아볼 수 있는 '안방도서관시대' 구현에 있다면 이를 위한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가 저작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보사회 구축을 위해 저작권은 중요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권자의 권리는 일반 재산권과 마찬가지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하나 저작권은 무제한적인 권리는 아니다.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에게 그들의 독창적인 표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대신 다른 사람들이 저작물에 대한 아이디어와 정보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저작자의 창작노력에 대한 경제적 보상과 인격 존중으로 저작자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는 한편,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그 원활한 이용을 촉진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문화의 이용자인 국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저작물의 공정한 사용을 위해 저작자의 권리 일부를 제한하는 저작권제한 제도를 두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의 저작권법도 도서관이 지식과 정보의 전달이라는 문화적·공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측면을 고려하여 저작권법상 도서관에 대한 예외조항을 두어 일정한 경우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II-2. 디지털도서관 운영과 전송권

디지털도서관은 장서관리보다는 정보이용에 초점을 맞추는 기능을 갖고 있으므로 타 정보기관 자료를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전문능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미래의 도서관은 네트워킹 능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라우터, 서버 등을 다루는 기술이 요구될 것이며 멀티미디어 정보처리에 대한 기술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대학에서 디지털도서관을 구축하려고 하는 가장 큰 목적으로 윈스톱 서비스에 의하여 모든 도서관 업무를 처리하고 이용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며 다양한 매체의 정보를 용이하게 유용하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편리하고 광범위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스템 구축은 이제 점점 본격적인 학생유치에 나서야 하는 대학에서는 매우 중요한 과제다. 과거 디지털도서관의 주축이 하드웨어에 의해서 많은 계약을 받았지만 현재는 기술적인 면에서나 경비적 면에서나 점점 유리한 구축환경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또한 오늘날에 인터넷이라는 표준인터페이스가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자료의 구축방법만 표준화되고 통일된다면 자료가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손쉽게 전달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분담수서가 용이해지고 그 결과 협력활동이 강화될 것이 틀림

없다.

대학도서관이 상호협력 방법을 통하여 디지털도서관 구축함으로써 교수, 직원, 학생을 위한 새로운 정보서비스를 개발하거나 또는 현재의 정보서비스를 개선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일대 다수의 정보서비스 방법을 일대일의 정보서비스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고 또한 이용자가 연구실 또는 일정한 장소에서 외부기관의 정보를 자유로이 검색할 수 있고 외부 정보기관에서 직접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또한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생산을 확대할 수 있으며 캠퍼스나 자택이나 어디서든 상관없이 학습이 가능해지며 교수님들의 연구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새로 '전송권'이 신설됨으로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되었다. '전송권'은 저작물을 전송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권리로서 저작자에게 인정하는 권리로 신설한 것이다. 컴퓨터통신 등 네트워크를 통해 저작물을 전송하는 경우에 저작자의 이용허락을 받도록 하기 위해 저작권재산권에 전송권을 추가하였다. 디지털도서관 등에서 이용자의 요구에 응하여 저작권이 있는 원문정보를 관외로 전송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복제권 및 전송권에 관한 권리처리를 명확하게 해 두어야 한다. 이것은 저작(권)자에게는 또 하나의 권리가 추가된 것이라 할 수 있는 반면에, 정보이용자 특히 정보관리자(사서)의 입장에서는 정보를 관리,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더 많은 제약이 추가된 것이라 할 수 있다.

II-3. 디지털도서관과 저작권문제

디지털도서관에 대하여 가상도서관, 벽이 없는 도서관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나 디지털도서관이란 전통적인 도서관의 기능을 기본으로 하여 전자적인 형태의 정보, 즉 디지털 형태의 멀티미디어 정보의 수집, 가공, 유통에 있어 컴퓨터와 통신망을 기반으로 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공간적, 시간적 제약 없이 양질의 정보를 획득할 수 있게 하는 정보서비스의 체계라고 정의할 수 있다.

미래의 도서관 이용자들은 도서관자료의 목록이나 초록, 목차는 물론 저작물의 본문까지도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이용하고 도서관은 소장 도서관자료를 정리, 가공, 전산화하여 이를 새로운 멀티미디어를 통하여 제공하게 될 것이다.

각종 도서관은 소장자료를 디지털화하여 데이터베이스로 제작, 도서관 이용자에게 관내에서 제공하고 있으나 이러한 현상은 그동안 저작권과 마찰을 빚어 왔다. 즉 도서관 자료의 디지털화가 저작권법상 복제의 행위에 해당되고, 저작권법 제28조에 의한 자체 자료 보존 목적이 아니므로 이 경우 저작권의 제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아 명목상으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했다. 또한 도서관자료 데이터베이스의 관내 열람이나 도서관간의 자료교환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법과 현실환경에서의 동떨어진 현상은 세계각국이 겪는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도서관의 전산화서비스와 관련하여 각국이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나라

도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하여 도서관에서의 디지털복제와 디지털화된 자료를 관내에서 열람하는 경우 및 도서관간의 전송은 저작권법상 허용하는 방안으로 작년 1월 저작권법을 개정하였다.

현행 개정 저작권법은 온라인상 저작물 송신에 대한 저작자의 '전송권'을 저작재산권으로 새로 추가하면서 디지털도서관 구축과 관련하여 일부 도서관에서는 저작자의 전송권의 일부를 제한하였다. 그러나 저작권법상 인정된 기관이외의 도서관이나 기관에서의 자료의 복제·전송시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개인차원에서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자에 대해 일일이 허락을 얻는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학술잡지 한 부에 대한 저작권처리도 각각의 논문에 대한 저작권자가 따로 있고 또한 잡지 전체에 대한 편집 저작권자가 별도로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이 세계적으로 검토되어 미국의 경우 1977년 저작자, 출판사 및 복제이용자들로 구성된 비영리단체인 CCC(저작권사용허가센터)를 설립하였다. 이 단체는 회원사 저작권을 집중관리하고 저작물 복사이용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관리비를 제외하고 저작권자에게 지불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작년 7월 한국복사전송권센터가 설립되어 전송권에 관한 저작권자 권리를 대신 행사하고자 설립되었다.

II -4. 디지털도서관과 개정저작권법 관련내용

1. 도서관과 저작권법

정보통신망의 발달 등 최근의 급격한 저작권 환경변화를 반영한 저작권법(2000. 1. 12 공포)이 개정되어 저작권자에게 전송권을 부여하고 도서관에서의 저작재산권제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상당수의 조문을 신설하거나 개정하였다. 이에 맞추어 저작권법의 위임한 사항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안한 저작권법시행령이 2000. 7. 27일 공포·발효되었다. 이러한 개정저작권법 내용중 도서관과 관련된 내용을 좀더 상세하게 살펴보기로 하겠다.

전자도서관 구축과 관련, 도서관에서의 디지털 복제·전송 허용 및 저작권 보호의무 부과(저작권법 제28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제3조의2)

정보의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계획에 따라 전자도서관 구축사업과 도서관 정보화사업이 추진중에 있으며 이를 위한 저작권 처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정 저작권법에서 저작권을 일부 제한하는 '도서관에서의 디지털 복제·전송' 규정을 신설하였다.(법 제28조 제2항)

또한 디지털 복제의 용이성 및 신속성, 광범위한 배포성 등의 특성을 감안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더라도 동법 시행령에서 저작자의 권리가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아날로그 복제와 달리 디지털 복제가 가능한 도서관의 범위를 제한하는 한편, 저작권자의

도서관관련 저작권법 조항

개 정 전	개 정 후
<p>신설</p>	<p>제18조2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스스로 전송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하도록 허락할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2000. 1. 12. 본조신설)</p>
<p>제27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권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단서신설></p>	<p>제27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권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일반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28조(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도서관법에 의한 도서관 및 도서·문서·기록 그밖의 자료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하 “도서관등”이라 한다)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관된 자료를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 2. 도서관 등이 자료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다른 도서관 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저작물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p>제28조(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 ①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한 도서관과 도서·문서·기록 그밖의 자료(이하 “도서등”이라 한다)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관된 자료를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2000. 1. 12개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 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 (2000. 1. 12 개정) 2. 도서관 등이 자료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다른 도서관 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저작물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p>② 도서관 등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통하여 당해 시설과 다른 도서관 등에서 이용자가 도서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이를 복제·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서관 등은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00. 1. 12. 본항신설)</p>

개정시행령 조항

개 정 전	개 정 후
<p>시행령 제3조(복제를 할 수 있는 시설)법제2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국립중앙도서관·공공도서관·대학도서관·학교도서관·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설립한 특수도서관을 제외한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도서·문서·기록 그밖의 자료를 보존·대출 기타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도서·문서·기록 그밖의 자료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p>시행령 제3조(복제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법 제2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 등”이라 한다)에 고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복제하는 경우에는 국립도서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도서관, 한국과학기술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원 도서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기술정보원 및 연구개발정보센터의 도서관에 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국립중앙도서관·공공도서관·대학도서관·학교도서관·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설립한 특수도서관을 제외한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도서·문서·기록 그 밖의 자료를 보존·대출 기타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도서·문서·기록 그 밖의 자료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p>제3조의 2(권리보호에 필요한 조치) 법 제28조제2항 도서관 등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통하여 당해 시설과 다른 도서관 등에서 이용자가 도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이를 복제·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서관 등은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00. 07. 27 신설></p>

보호를 위해 복제방지장치 및 암호화 등의 기술적인 조치를 의무화하였다. 즉 디지털 복제를 할 수 있는 도서관을 국립도서관과 전자도서관 구축 도서관으로 한정하고 이에 따른 저작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전자도서관 구축의 원활한 지원과 저작자의 권리침해를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2. 개정저작권법의 내용

1) 복제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시행령 제3조)

개정 저작권법 제28조 제1항에서는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에서 저작물이 아날로그 복제를 허용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제28조 제2항에서 도서관 등의 디지털 복제·전송을 허용하고 있어 시행령으로 복제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를 정하는데 있어서 심각한 권리침해가 예견되는 디지털 복제에 대하여는 복제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를 달리 규정하고 있다. 즉, 제28조 제1항에 있어서의 아날로그 복제를 할 수 있는 시설은 현행과 같이 ①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국립중앙도서관·공공도서관·대학도서관·학교도서관·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설립한 특수도서관은 제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도서·문서·기록 그밖의 자료의 보존·대출 기타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이지만, 제28조 제2항에 의해 컴

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고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복제하는 경우의 허용 도서관은 다음과 같이 제한된다.(시행령 제3조 단서)

국립도서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도서관, 한국과학기술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원 도서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기술정보원 및 연구개발정보센터의 도서관이다. 여기서의 국립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법원도서관, 및 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른 국립대학교, 교육대학교, 산업대학교, 전문대학교 등을 말한다.

이상과 같이 디지털 복제를 할 수 있는 도서관을 국립도서관 및 국가지원하에 구축중인 디지털도서관을 시행중인 도서관으로 한정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다수의 도서관에서 저작물을 디지털화하는 행위를 면책하는 것은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디지털 복제가 가능한 도서관 이외의 다른 도서관에서 디지털 복제가 가능한 도서관으로부터 복제물을 전송받아 자체서버에 저장하여 관내 열람용으로 서비스 하는 행위는 자체 서버에 저장하는 행위가 다시 디지털 복제에 해당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것은 실제 우리 사회에서 디지털도서관 구축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 파악이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현실은 국립대학교보다 일부 사립대

학교가 먼저 전자도서관 구축을 시작했으며 그 데이터베이스도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시행령에 명시한 국립대학의 범주에 포함되는 많은 대학들이 예산부족 및 인식부족 등의 이유로 전자도서관에 대한 추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현실이므로 타 기관의 자료를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이 경우 통신망상의 저작권자의 권리처리를 위해 설립된 복사전송권관리센터가 저작자의 권리를 신탁받아 전송계약을 체결하여 전자도서관 서비스를 활성화하여 이용자의 편리를 도모할 예정에 있으나 아직까지는 활동이 미비한 실정이며, 명확한 방안이 체계가 제시된 것도 없는 실정이다.

2) 권리보호에 필요한 조치 (시행령제3조제2항)

개정법은 공표된 저작물의 공정사용을 인정하는 '저작재산권의 제한' 중 도서관 등에 대한 면책범위에 있어서 전자도서관 구축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제28조 제2항을 신설하였다. '도서관등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통하여 당해 시설과 다른 도서관등에서 이용자가 도서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이를 복제·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서관 등은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열람할 수 있도록 도서 등을 복제·전송할 수 있다'는 법문의 해석상 도서관이 관내 이용자의 열람만을 목적으로 도서 등의 저작물을 컴퓨터 등에 의해 복제하거나 도서관간에 전송하는 경우에는 공정사용으로 인

정하여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저작권 침해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조항의 신설은 도서관 등이 디지털도서관 구축을 목표로 자관에 소장하고 있는 원문정보를 디지털화 할 수 있고, 다른 도서관의 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전송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관내의 이용자 그리고 다른 도서관의 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이라는 부분에 대해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 현재 대부분의 기관이 LAN을 통해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환경에서 기관 내 도서관 소장정보의 검색 및 전송이 가능하다는 점을 파악하지 않고 있다. 또한, 관외 이용자에 대한 전송 및 관내에서 컴퓨터 등을 이용한 출력과 전산기억장치의 저장 등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도서관간에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전송을 허용한다는 부분은 저작법 시행령에서 해당시설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유념하여야 한다. 이것은 저작물의 복제물이 관외에서의 이용 즉, 특정 시설이외의 관외로 원문정보가 복사 전송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이다. 도서관이 저작자의 합법적인 허락을 얻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전송 과정에서 저작물의 불법복제 및 전송이 일어날 가능성 매우 심각하게 발생될 것이다. 이러한 속성을 고려하여 저작물이 복제 및 전송서비스이 주체인 도서관이 취해야 할 기술적 조치나 절차 등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① 불법이용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조치로서

- 당해 시설과 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도서관등의 이용자가 컴퓨터 등의 화면에 자료만 나타나게 하는 방법외에는 자료등을 전송 및 복제 할 수 없도록 하는 복제방지장치의 설치
 - 당해 시설과 다른 도서관등의 이용자의 허락받지 않은 이용자가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암호화 조치
 - 컴퓨터 등의 화면상의 자료외의 방법으로 자료를 이용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할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
 - 판매용으로 제작된 전자기록매체의 이용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의 설치
- ②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직원교육
- ③ 컴퓨터 등에 경고표지의 부착

시행령 제3조의 2 각호와 각목의 관계는 중첩적인 것으로, 디지털 복제를 할 수 있는 시설에서 법 제 28조제2항에서 허용된 복제를 적법하게 하기 위하여는 시행령 제3조의 2 각호와 각목의 조치들을 모두 취하여야 할 것이다. 이중 제3조제1호의 기술적인 조치는 복제방지장치, 암호화조치, 이용 및 변경확인 조치와 판매용전자기록매체의 이용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이다. 복제방지장치는 저작물의 접근은 통제하지 않지만, 이용방법 중에서 화면에 보이는 방법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전송하는 것은 금지하는 장치를 말한다. 암호화조치는 저작물이 당해 도서관과 다른 도서관 이외의 장소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데 그 규정 목적이 있다. 한편, 이미 CD-ROM

등 전자기록매체의 형태로 유통되는 판매용 저적물은 저작자 및 매체제작자의 상당한 투자본은 고려하여 도서관에서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였다.

III. 결 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서관의 공익적 특성을 감안하여 개정저작권법에서 저작권자의 전송권의 일부를 제한함에 따라 그동안 저작권법 침해문제로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예로가 있었던 디지털도서관 구축을 위한 자료의 디지털화가 자유롭게 되었다.

이와 같이 디지털자료의 복제는 과거 아날로그 자료의 복제와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가 있다. 디지털자료의 복제는 아주 손쉽게 이루어지고 그 질적수준도 원본과 별 차이가 없다. 또한 한번 복제가 이루어지면 그 전달이 대량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은 과거 아날로그 복제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저작자의 권리의 본질적인 침해 및 저작권법관련 외국과의 분쟁가능성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때 도서관의 면책규정을 현재보다 더 폭넓게 부여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전자도서관의 궁극적인 목표가 누구나 안방에서 원하는 자료의 본문을 검색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소위 '안방도서관 시대'의 실현에 있다고 본다면 결국은 전자도서관이 구축된다 하더라도 일반국민에 대한 디지털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유료저

작물 이용시스템을 갖출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저작물 이용자는 전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본문정보를 도서관이 아닌 장소에서 이용하고자 할 경우 저작권자로부터 적법한 이용허락 절차를 획득하는 절차를 밟아야만 하는 것이다. 현행 전자도서관이 설립되었거나 추진중인 대부분의 대학도서관은 정보공유와 함께 이용자들에게 신속히 정보 서비스를 해야 한다는 데에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나, 저작권문제로 관외 정보서비스를 주저하고 있다. 그래서 저작권과 관련하여 법적인 소지가 별로 없는 자체 대학의 학위 논문이나 기관내에서 발행된 간행물을 중심으로 이를 디지털화하여 원문제공 서비스를 행하고 있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또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들은 기본적으로 국립기관이라 할 수 있다. 이들 기관은 대부분이 첨단정보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한다는 특성상 자체적으로 그리고 자원공유를 목적으로 한 협약기관간에 오래 전부터 단계적으로 전자도서관 구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복제할 수 있는 시설의 지정은 도서관의 입장에서 시설지정 기준의 모호함으로 인한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용자의 정보요구는 편리한 기기의 활용

으로 빠른 정보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데, 정보제공자가 적법한 환경에서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기까지는 현실적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또 하나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IV. 참고 문헌

이경직 : 지식정보사회에서의 도서관과 저작권, 2000
 오승중·이해원 : 저작권법, 2000, 박영사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1999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시행령 및 시행규칙 설명회 자료, 2000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홈페이지와 저작권, 2000
 이규양 : 디지털도서관과 저작권, 1999
 김재윤 : 출판계 입장에서 본 저작권법
 정찬모 : 전자도서관의 법적문제, 정보통신정책, 1998
 임무혁 : 디지털도서관 구축을 위한 방안. 1999, 디지털도서관 여름호
 김민기 : 디지털도서관의 상호협력을 통한 정보 서비스 방안, 2000, 디지털도서관 여름호